오사카(大阪) 변호사회에 등록하여 변호사를 하고 있는 아타 히로후미(阿多博文)입니다.

저는 일본측의 보고로서 「도산법의 근시의 검토 과제(디지털화를 근거로 해)」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에서는 전체를 4개로 나누어 첫째, 디지털화에 이르는 경위와 법개정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둘째, 법제화 시에 논의된 민사재판절차의 디지털화 장면, 셋째, 파산절차 등에 있어서의 2023년 개정 개요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개정 후의 실무상의 문제를 몇 가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법 정비 단계에서는, IT화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최근의 설명에서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보고에서는, 디지털화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1 디지털화에 이르는 경위와 법 개정 상황

민사재판의 디지털화 배경입니다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민사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디지털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층 더 신속화 및 효율화 등을 도모해, 민사재판을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하는 관점에서의 개정이 됩니다.  
덧붙여 본 보고에서는, 민사재판절차라는 용어는, 민사소송절차와 그 이외의 민사비송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 개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절차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어 2017년 6월 국무회의 결정인 '미래 투자 전략 2017'에서 '디지털시대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하나로 민사소송절차의 디지털화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5월에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48호. 2022년 개정법)이 성립되고 공포되어 2026년 3월까지 전면시행될 예정입니다.또한 이미 일부는 선행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비송절차의 디지털화는 2021년 12월 국무회의 결정인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에서 재판관련절차의 디지털화로서 다루어져 2023년 6월에 '민사관계절차 등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2023년 법률 제53호. 2023년 개정법)이 성립되고 공포되어 2028년 6월까지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날에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웹회의 등을 이용한 기일에의 참가 등 일부 규정은 민사소송법 등의 디지털화 전면 시행일 등에 앞서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2023년 개정법은 가사소송 및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집행관계소송 외에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재판절차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파산절차 등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제2 민사재판 절차의 디지털화 장면

민사재판절차의 디지털화 장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신청 등의 온라인화·재판기록의 페이퍼리스화와 (2) 기일 등에 대한 웹 회의 방식으로의 참가입니다.

　1. 신청 등의 온라인화·재판 기록의 페이퍼리스화로부터 설명합니다. 재판절차의 어느 범위에서 온라인화·페이퍼리스화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일부로 한정하면 전자데이터와 종이기록이 혼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고 전면적인 온라인화, 페이퍼리스화가 실현되었습니다. 한편, 파산절차 등에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온라인화, 페이퍼리스화가 실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무화란 온라인 신청 등의 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입니다.서면관리 등의 비용 절감이나 절차의 신속화·효율화 등에 의한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절차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온라인 신청 등을 의무화하면 국민의 파산 절차 등의 이용 기회를 사실상 빼앗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개정법은 신청 등의 이용자 모두에게 온라인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외에 파산관재인 등(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대리, 보전관리인 대리를 말한다.)으로 선임받은 자에 한해 온라인에 의한 법원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개정 파산법 제13조, 개정민소 132조의11).  
덧붙여 신청 등에 시스템의 이용을 의무화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의 전자 데이터의 송달을 수령할 때에도, 시스템의 이용이 의무가 됩니다.  
중간 시안 단계에서는 파산채권자에 의한 채권신고에 대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자에 대하여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현시점에서는 의무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였기 때문에 요강안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 웹회의 방식의 이용  
　민사 재판 절차의 기일 등에, 어느 범위에서 웹회의 방식의 이용을 인정하는가 하는 논의입니다. 웹회의 방식을 도입하는 장점으로 다음 사항이 꼽히고 있습니다.  
가. 당사자·대리인이 법원에 현실에 출두하기 위한 시간·비용 등의 부담의 경감.  
나. 당사자·대리인의 법원 출석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용이.  
다. 법원에 실제로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당사자(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통신기기를 통해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보장.  
라. 법원에 현실로 출석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당사자(DV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 현실 법정 등에서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법원 왕복 시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에게 통신기기를 통해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웹회의 방식의 이용은 당사자의 선택사항 중 하나이며, 당사자는 법원에 출두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법원은 당사자의 출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대석을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년, 2023년 개정법의 웹회의 방식의 이용에 있어서, 호스트인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현실의 법정 등에서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회의의] 이용이 인정되는 것은 게스트인 당사자·대리인, 나아가 파산관재인 등 입니다. .  
덧붙여 개정법은, 웹 회의 방식의 관여를 실제의 [물리적] 출석과 동가치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은 사실적인 출석이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웹 회의 방식의 이용을 인정하려면 상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도 요구됩니다.).

제3 파산절차 등(「파산법」 2조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절차 및 「파산법」 12장에서 규정하는 면책·복권과 관련된 절차)의 전자화

지금부터는 도산 절차 등의 전자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등 및 시스템 송달  
법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 등은 모든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법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정 파산법 13조에서 개정 민사소송법 132조의 10을 준용). 따라서 파산절차 개시신청이나 채권신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법원에의 보고 등이 온라인화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해지지만, 포맷 입력 방식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신청 등의 편리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전자 데이터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출력 서면을 「서류의 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게 됩니다만, 송달을 받을 자가 시스템 송달을 받는다는 취지의 신고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 송달의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13조에 의한, 개정 민소법 109조부터 109조의 4까지의 준용).  
시스템 송달이란, 법원 서기관이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온라인으로 법원의 시스템에 액세스해서 송달되어야 할 전자데이터의 열람이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이 조치가 취해진 취지의 통지를 하는 규율을 말합니다(개정 민소법 109조 내지 109조의 4).  
또한 파산절차 등에서는 송달 외에 송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고지 또는 통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1980년 개정법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시스템 송달방법에 의한 것이 인정됩니다.  
  
파산절차 등에서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에게 온라인 신청 등 및 시스템 송달의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민소법 132조의 11의 준용). 또한 파산관재인 등에게도 마찬가지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준용).  
이 파산관재인 등의 의무화 설명 방법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파산관재인은 신고채권에 대하여 인부를 하거나 임무종료 시에는 보고를 하는 등 법원에 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들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하면 파산채권자표 등의 사건기록이 페이퍼리스화되는 것과 맞물려 신속화·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파산관재인·법원 간의 데이터 이용·활용의 이점이 있다는 이유이고, 둘째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이며 직무로서 관여하는 것이므로, 파산절차의 신속화·효율화에 솔선수범하여 임해야 할 자라고 할 수 있는 파산관재의 지위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도 온라인 신청 등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부동산 등의 임의 매각 등의 허가의 신청이나, 채권의 인부서, 재산목록 및 배당표의 제출 등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2. 제출된 서면 등 및 기록매체의 디지털화  
온라인으로 제출된 전자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건 기록이 됩니다.  
이에 파산절차 등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기재되거나 기록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디지털화하여 사건기록으로 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법은 법원서기관의 사무로 삼았습니다. 단, 디지털화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디지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법원등이 작성하는 문서, 예를 들면, 법관이 작성하는 판결문, 법원서기관이 작성하는 조서나 파산채권자표등에 대해서도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3. 디지털화된 사건기록의 열람 등  
개정법에서는 열람 등 청구 주체와 관련된 파산법 11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다음의 규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인은 디지털화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 복사(다운로드), 사건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내용을 증명한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파산법 11조의2, 11조의3).  
　다음으로, 개정 파산법 11조 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명령, 보전처분 또는 재판 중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파산절차 개시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개정 파산법 11조의 4).  
  
또, 디지털화 된 사건 기록의 열람 등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합니다만, ① 이해 관계인은 법원 설치 단말기 및 법원외 단말기를 이용한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신청인, 파산자(채무자), 파산관재인등 및 「채권자로서 열람등이 인정된 자」는 언제라도 사건의 계속중에 법원외 단말기를 이용한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 기일 내의 웹회의 방식 또는 전화회의 방식의 이용  
　2023년 개정법에서는 당사자 등이 웹회의 방식이나 전화회의 방식을 이용하여 파산절차 등에 참가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나, 웹회의 방식뿐인지 아니면 웹회의 방식 또는 전화회의 방식을 모두 이용가능한가 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장면마다 그 특성을 근거로 해 차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술변론기일이더라도 임의적 구술변론(파산법 8조)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웹회의 방식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습니다(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개정민소법 87조의2 제1항 및 3항의 준용).  
  
　또, 심문기일에서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는 웹회의 또는 전화회의에 의해 관여할 수 있고(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개정 민소법 87조의 2 제 2항 및 3항의 준용), 참고인 등의 심문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웹 회의 방식에 의해서 참고인 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쌍방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전화회의 방식에 의하여 참고인 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개정 민소법 187조 3항 및 4항의 준용).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웹회의 방식에 따라 채권조사기일에 있어서의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개정 파산법 121조의 2). 개정 민소법 87조의 2 제1항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채권조사기일에서는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기일에 있어서도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웹회의 방식에 의하여 채권자집회기일에 있어서의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개정 파산법 136조의 2). 여기에서도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 대처해야 할 과제 - 향후 실무 운용

1. 신청 등의 의무화가 일부에 한정된 것 - 신고채권자에 의한 온라인 이용의 추진  
　2022년 개정 시에는 시스템 이용 인센티브로서 제소비용의 저액화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 등에서 신고채권자에게 있어서는 신청비용의 저렴화는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기타 온라인화의 장점으로서 법인 등에 대한 사전의 포괄적인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수송달과 세트로 시스템 이용, 백오피스 연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시의 채권자일람표에 채권자의 법인 등 번호가 기재되고, 포괄적인 시스템 송달을 신고한 법인채권자에 대하여는 파산개시결정이나 채권인부의 신속한 시스템 송달도 가능합니다. 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로의 편리성이 향상되는 것, 또 법인 등 번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 필요가 없어지는 것 등은, 신고채권자의 메리트로서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실무에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나 자료, 예를 들면, 채권자집회에서 배부되는 자료(재산목록, 수지계산서 등), 폐지결정의 제공(파산법 217조 4항)등의 온라인에서의 제공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디바이드[역자주: 디지털 격차]’에 대한 대응 - 서포터 제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정되어 있는 서포터 제도에서는, 신청 등을 하는 본인이 ID·PW를 입력할 수 없을 때에, 서포터가 자신의 ID·PW를 입력해 신청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또한 본인이 서포터에게 입력을 요청했음을 정보로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에 의한 신고 등은 횟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한 채권자가 거기까지의 수고·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전자 신청을 하는 인센티브가 작용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채권조사기일에 있어서의 웹회의 방식의 실시 방법  
채권조사기일이란 파산채권자 등의 관계인이 법원의 면전에 회합하여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구술진술 등의 행위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은 재판장이 지휘를 하되 법원 면전에서 하면 족하고 법정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 청사 밖 회의장이나 공회당 등에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 회의 방식으로 채권 조사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비공개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호스트인 법원이 파산관재인, 파산자, 파산채권자에게 초대장을 제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파산관재인, 파산자에게 초대장 제공은 용이하지만, 파산채권자에게 초대장은 어떻게 통지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개시결정 시에 개시결정과 동시에 지정할 것인가, 또는 비공개절차인 이상 공고에서는 비공개성은 담보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관이 책상에서 절차를 개최하는 완전한 가상 채권조사기일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3. 채권자집회에서의 웹회의 실시 방법  
채권자집회는 채권자에 대한 정보개시의 장인 동시에 채권자의 의향을 파산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한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의 지휘 하에 열리며(파산법 137조), 보통은 법원 내에서 열리지만 대규모 사건에서는 법원 밖의 공회당 등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산법이 예정하는 채권자집회는 ① 재산상황보고집회(파산법 31조 1항 2호), ② 이시폐지결정에 있어서의 의견청취집회(동 217조 1항), ①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동88조, 89조), ④ 소정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집회(동 135조)이며,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파산관재인, 파산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를 불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파산법 136조 1항).  
  
이 채권자집회를 검토하기 위해 회사법의 가상주주총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5년 제정된 회사법은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소집통지에 기재할 필요가 있었는데(298조 1항 1호, 299조 4항), 2021년 6월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에 따라 회사법의 특칙으로서 '장소의 정함이 없는 주주총회'에 관한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장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으로 가상 온리(only) 총회의 개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실시 형식에는, 다음의 3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리얼(real)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주주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 다음으로, 버추얼 온리형(virtual only) 주주총회에서 리얼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나 주주 등이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해, 주주총회에 회사법상의 「출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버추얼 주주총회라고 불리는 리얼과 버추얼의 쌍방이 혼재하는 주주 총회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형에도 참가형이라 불리는 리얼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에 소재하지 않는 주주가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해 심의 등을 확인·방청하는 타입과 출석형이라 불리는 리얼 주주총회의 장소에 소재하지 않는 주주가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해 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관여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집회에 웹회의 방식으로 참가하는 파산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법의 가상총회의 출석형에서는 정보전달의 양방향성과 즉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의결권 행사 방법이 현재의 파산법 139조, 파산규칙 46조로 대응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참가형에서는 의결권의 사전행사가 전제되는데, 파산법 139조의 사전행사를 한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몇 가지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